입학관리정책위원회 규정

(제정 2009. 3. 5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부의 대입자율화정책에 따라 변혁을 추진함에 있어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입시제도 및 홍보전략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 설치된 입학관리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위원회는 입학관리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한다.

1. 입학자원감소 및 대입자율화정책에 따른 입시 장, 단기 계획에 관한 사항
2. 전년도 신·편입학 업무분석 보고 및 타 대학 신·편입학 업무분석 보고에 관한 사항
3. 대입자율화정책에 따른 입학전형유형 개발 및 그에 따른 분석에 관한 사항
4. 수시 및 정시모집 군 선택 및 선발인원 배정에 관한 사항
5. 전체 입시 및 학생부종합전형 홍보전략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6.11.>
6. 입학사정관제도 제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입학전형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 <개정 2015.6.11.>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6.11.>

② 고등학교 교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4.1.1.>

④ 위원은 입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4.1.1.>

제5조(위원장의 직무구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5.6.11.>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지원실에서 관장한다.

제10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,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